

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5. 1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4월 2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5월 1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정일

가. 제안이유

재활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상위법 개정, 알기 쉬운 법령정비 용어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·정비하여 우리 구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재활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
 -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2항 : 6호 신설
 - “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” 추가
- 2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
 - 제4조(장려금 등의 지급) : 변경
 - 상위법 조항변경 : 제25조→31조
 - 장려금, 보상금 지급 →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
- 3) 재활용추진협의회 관련 조례 정비

○ 제5조(재활용추진협의회) : 변경

- 시민 → 구민,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→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
-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, 부회장 명칭을 위원장, 부위원장으로 변경
- 위원의 임기 연임조항 신설 : 한차례 연임 가능

○ 제5조의 2(위원의 제적·기피·회피) : 신설

4) 과태료 부과 근거 법규 변경, 기타 맞춤법 수정

○ 제7조(과태료 부과징수)~제10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·관리) : 삭제

- 과태료부과징수 사항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

○ 제11조(준용규정) : 변경

- 지방세 징수의 예 →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

○ 제12조(과태료의 귀속) : 삭제

- 과태료 귀속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준용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조금씩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포구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의 신설은 구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항의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- 5. 토론요지 : 없음**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-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- 8. 기타사항 : 없음**